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100500010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10년2월4일 www.czk.co.kr

[정보공개서 최종 수정일] 2024년7월29일 czk0124@naver.com

[정기스칸치킨]

정 보 공 개 서

정기스칸치킨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23 . .

[합자회사 정기스칸]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충북 청주 흥덕구 덕암로35번길 103 ,봉명동

TEL: (043)277-4031

FAX: (043)277-4033

목 차

I .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IX .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을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http://ftc.go.kr/data/hwp/20080306_103723.hwp)
(http://www.ftc.go.kr/new_contents/info/info_021m.php?lawcode=09)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사용 브랜드	주 소			
(자)징기스칸	징기스칸치킨	충북 청주시 흥덕구 덕암로35번길 103, 봉명동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1990.7.13	1990.9.1.	김현동	043-277-4031	043-277-4033
	법인등록번호	150113-0002006	사업자등록번호	315-81-02933	

징기스칸치킨은 법인 설립이후 가맹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일체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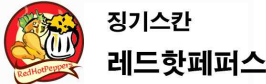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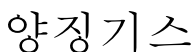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기타 사업을 운영하지 않으며 당사는 계열회사가 없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사용 브랜드	주 소		
대표	김현동	징기스칸치킨	충북 청주시 흥덕구 덕암로35번길 103, 봉명동		
	사업(경영)기간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1990.7.13~현재		김 현 동	043-277-4031	043-277-4033
관계	상호/이름	사용 브랜드	주 소		
배우자	유승남	징기스칸치킨	충북 청주시 흥덕구 덕암로35번길 103, 봉명동		
	사업(경영)기간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02.9.14~현재		김 현 동	043-277-4031	043-277-4033
관계	상호/이름	사용 브랜드	주 소		
사용인 (실장)	김석원	징기스칸치킨	충북 청주시 흥덕구 덕암로35번길 103, 봉명동		
	사업(경영)기간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1997.12.30.~현재		김 현 동	043-277-4031	043-277-4033
관계	상호/이름	사용 브랜드	주 소		

3.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전 세계를 아우러 치킨시장의 최강자 치킨시장의 황제가 되겠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상 호	징기스칸치킨 OO점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후 지역과 행정구역을 정하 여 결정한다.
상표(서비스표)		서비스표 등록번호 : 제 0013844호
		서비스표 등록번호 : 제 0045567호
		상표 등록번호 : 제 0526682호
		서비스표 등록번호: 제 0087055호
		서비스표 등록번호: 제 0219131호
		상표권 제 40-1871021호
		상표권 제 40-1843437호
광 고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상기의 표장(현)에 대한 상표권및 지적 재산권 일체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4.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해당없음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해당없음				
다른 기업에 가맹사업 일부를 인도함	해당없음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합병함	해당없음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76,139	455,434	-379,294	441,760	-17,621	-16,803
2022년	82,236	444,153	-361,916	571,248	8,548	17,378
2023년	80,171	453,479	-373,307	554,060	-11,304	-11,391

그 근거자료는 별첨과 같습니다.

2) 당 가맹본부는 가맹사업 이외의 사업을 경영하지 않아서 당사의 가맹사업관련 매출액은 위 1)의 매출액과 같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가맹사업임원만 해당됩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김현동	대표	2009.11.~현재	징기스칸 대표	경영,가맹점 관리
	유승남	이사	2002.9.14~ 현재	징기스칸 이사	경영관리
	김석원	실장	1997.12.30~ 현재	실장	마케팅,영업
가맹사업 비관련 임원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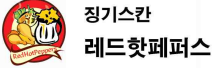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3	0	3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징기스칸치킨외 다른 가맹사업을 경영한 사실이 없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징기스칸 CHINGIZKHAN	지정 상품 (제29류)	2001.2.13. 출원 2002.7.31. 등록	출원 제2001-0005205 등록 제0526682	(자)징기스칸	2032.7.31.
	지정 서비스업 (42류)	1989.10.19. 출원 1991.4.9. 등록	출원 제 1989-0002727 등록 제0013844	(자)징기스칸	2031.4.9
	지정 서비스업 (제43류)	1996.12.14. 출원 1998.8.18. 등록	출원 제1996-0015587 등록 제0045567	(자)징기스칸	2028.8.18
	지정 서비스업 (30류)	2001.8.10. 출원 2003.6.5. 등록	출원 제2001-001544 등록 제0087055	김현동	2023.6.5.
	지정서비 스업 (43류)	2010.5.28. 출원 2011.10.17. 등록	출원 제2010-0013767 등록 제 41-0219131	(자)징기스칸	2031.10.17
	지정서비 스업(43류)	2018.11.19. 출원 2022.5.24. 등록	출원 제400-2018-0160587호 등록 제 40-1871021호	(자) 징기스칸	2032.5.24
양징기스	지정서비 스업(43류)	2020.7.24. 출원 2022.3.11. 등록	출원 제 40-2020-0129860호 등록 제 40-1843437호	(자)징기스칸	2023.3.11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시 정해진 상권내에서만 상표권을 가지고 가맹점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 (<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징기스칸치킨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2002년 9월 1일

2. 징기스칸치킨의 연혁

가맹본부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징기스칸	징기스칸치킨	김현동	2002.9.1.~ 현재	충북 청주 흥덕구 덕암로35번길103,봉명동

3. 징기스칸치킨의 업종

영업표지	업종	
징기스칸치킨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치킨	닭고기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징기스칸치킨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 수	직영점 수	전체	가맹점 수	직영점 수	전체	가맹점 수	직영점 수
전체	20	20	-	20	20	-	20	20	-
서울	-	-	-	-	-	-	-	-	-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	-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1	1	-	1	1	-	1	1	-
세종	2	2	-	2	2	-	2	2	-
경기	3	3	-	3	3	-	3	3	-
강원	-	-	-	-	-	-	-	-	-
충북	8	8	-	8	8	-	8	8	-
충남	6	6	-	6	6	-	6	6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5. 바로 전 3년간 징기스칸치킨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년12월31일	19	3	2	-	-	20
2022년12월31일	20	-	-	-	-	20
2023년12월31일	20	-	-	-	-	20

징기스칸치킨 가맹점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별지를 확인하십시오.

가맹점 리스트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6. 징기스칸치킨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징기스칸치킨외 다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당사는 가맹점 사업자 한명이 2023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닭고기 판매만을 매출로 산정한 것이며 이외의 상품매출은 제외되었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3년 말 가맹점 수	2023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연평균 매출 상한	가맹점 면적 3.3m ² 당	연평균 매출 하한	가맹점 면적 3.3m ² 당	
전체	20	36,638	2,442	62,350	5,195	28,686	955	
서울	－	해당없음						
부산	－	해당없음						
대구	－	해당없음						
인천	－	해당없음						
광주	－	해당없음						
대전	1	해당없음						5곳 미만
세종	2	해당없음						5곳 미만
경기	3	해당없음						5곳 미만
강원	－	해당없음						
충북	8	39,320	2,939	62,350	5,195	30,290	1,808	
충남	6	34,952	2,184	41,156	2,956	28,686	1,740	
전북	－	해당없음						
전남	－	해당없음						
경북	－	해당없음						
경남	－	해당없음						
제주	－	해당없음						

8. 징기스칸치킨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징기스칸치킨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년	20	3628.3 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지사나 지역총판 없이 가맹본부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해당사실이 없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는 2023년 징기스칸치킨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이 발생되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34]쪽을 참고하십시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비공개)	-	-	-	-	-
광고	-	-	-	-	-	-
	-	-	-	-	-	-
	-	-	-	-	-	-
	-	-	-	-	-	-
판촉	-	-	-	-	-	-
	-	-	-	-	-	-
	-	-	-	-	-	-

11. 가맹금 예치 기관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민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가맹금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국민은행 404001-04-423529	청주서지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143-5	1588-9999

○직접방문에 의한 방법

가맹금 예치신청서 교부 ▷ 가맹금 예치신청서를 인근 국민은행에 가맹금과 함께 제출 ▷ 국민은행 가맹금 예치신청서 확인,접수 후 가맹본부와 국민은행이 개설한 가맹금 예치 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 ▷ 국민은행 가맹금 예치증서를 교부받아 보관

○인터넷에 의한 방법

국민은행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 ▷ 공인인증서 다운받아 설치 ▷ 홈페이지 “기업서비스” 클릭 후 SOHO센터 ▷ “가맹금예치제도”를 클릭 후 가맹점 사업자“징기스칸”을 찾아 화면에 나와있는 순서대로 금액입금

1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해당사항없음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징기스칸치킨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냉난방기, 가스 및 전기 증설, 외부배기 설비, 철거비용, 배달용 오토바이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일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하지 않음	보증금 없음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지정 업체	예치하지 않음	표준가격에 의한 산정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4,950				
가맹비	2,200	계약 체결 후 3일 이내	영업개시 1일 이전까지 계약 해지	가맹점모집을 위해 비용소요	각종경비 및 관리비
교육비	1,650	계약 체결 후 3일 이내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가맹계약 후 이미 교육이 이루어진 경우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개점행사비	1,100	계약 체결 후 3일 이내	영업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영업개시 행사를 위해 소요된 비용	계약자선택에 따라 시행됨

2) 당사에서는 보증금을 받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4,950
가맹비	2,200
교육비	1,650
개점 행사비	1,100
(현금)보증금	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12]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m ² 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15,400~19,800				33m ²
인테리어	가맹본부	13,200~16,500	1,320(일반) ~1,650(고급)	인테리어공사 착공시		3.3m ² 약 1,200
간판	가맹본부	2,200~3,300		간판공사 착공시		
주방기기류	가맹본부			최초 계약금으로 대체함		최초의 계약금 12,100원으로 대체처리됨
최초 개업경비및 초도 물품비용	가맹본부			최초 계약금으로 대체함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10평미만의 평수를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으며 초과시 지불 금액이 추가되거나 변경 될수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 희망자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가맹 희망자가 입지분석 의뢰 → 현장 조사 및 시장분석 → 가맹희망자에게 타당성과 동의 여부를 구함 (※ 가맹희망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으나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특별한 자격 조건은 없습니다.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징기스칸치킨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내역은 정보공개서 32페이지에 있습니다(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상표사용료		해당없음				
리스료		해당없음				
광고 분담금	(협력업체)	광고비의 50%	통보 후 2주내	반환불가		
교육훈련비	(협력업체)	200~500	교육 실시 7일 이전	교육 실시 1일 이전	이미 교육이 이루어진 경우이거나 30일 경과 후 아무런 통보 없을 시	교육 필요시 지급
간판류 임차료	(협력업체)	해당없음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미지정	1,500~3,500	간판 변경 전 3일 이내	반환불가	이미 간판이 교체된 경우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영업지역 보장금		해당없음				
리모델링 비용	미지정	12,000~15,000	리모델링 공사 실시 5일 이전	반환불가		필요시 2년마다 지급
인테리어,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미지정	12,000~16,000	교체·보수 전 7일 이내	반환불가		교체·보수 필요항목 당사와 협의 결정
점포환경 개선비용	미지정	본부의 부담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부분				[36]페이지 참조
재고관리 비용	미지정	해당없음				
회계처리 비용	미지정	해당없음				
지연이자	(협력업체)	연 20%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7일 이내			월 계속가맹금의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POS 사용료	미지정	월 40	다음 월 5일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2023년도에 당사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자체생산 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미포함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합니다)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단, 물품대금 등 대금의 지연내역이 있을 시에는 이를 모두 정산한 이후에 계약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				
추가 교육비	해당없음				
점포 이전비	해당없음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 사업자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

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현재 당사에서는 가맹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현재 당사에서는 가맹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현재 당사에서는 가맹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징기스칸치킨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 귀하가 징기스칸 가맹본부에 지급해야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보증금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29쪽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의 종료(해지)시까지 성실하게 가맹점영업활동을 계속하여야 하며 해지또는 종료일로부터 7일내에 가맹본부에 대한 채무의 전액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 채무상환이 지연되는 경우에 가맹점사업자는 위 지급일의 다음날로부터 변제일까지 연체된 채무액의 연 20%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가산하

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의 종료(해지)시 15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는 “상호,상표”등과 가맹본부의 사양에 의해 설계된 시설 및 인테리어,구조물등과 기타 가맹본부의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일체의 상징이나 표시물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전시 또는 게시된 간판,로고, 기타 가맹본부를 표창하는 표시가 포함된 일체의 저작물,메뉴판,와이드칼라,메뉴판넬,기업판넬 등을 즉시 제거하거나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서 제공하나 장비일체를 즉시반환하여야 하며 “영업표지”의 제거 의무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체기간에 대하여 가맹계에서 정한 1일 10만원씩 지체기간일수를 곱하여 위약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계약해지 등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가맹점사업자가 예치한 이행보증금이 있으면 이를 포함하여 채권,채무 관계를 정산한 나머지 금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할 의무가 개시됩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물품의 재고량,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고 일정범위 내 (10%~90%)에서 반품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계약해지일로부터 2년간 계약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유사한 영업을 할수 없으며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귀하가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징기스칸체인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귀하가 징기스칸치킨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구입 및 임차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귀하가 위 표의 거래형태에 강제로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징기스칸치킨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징기스칸치킨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 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2) 당사가 징기스칸치킨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 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 · 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후라이드치킨	왼쪽에 기재된 이외에 당사의 주요제품으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양념치킨			
데리(간장)치킨			
핫쉬골드치킨			
윙(날개)치킨			
봉(다리)치킨			
순살치킨			
순살양념치킨			
파닭			
참숯불바베큐			
불고기콘피자			
베이컨포테이토			
슈프림콘피자			
밤리치 콘피자			
핫치킨 콘피자			
훈제치킨			
뼈없는닭발			
감자튀김			
불닭			
콜뱅이			
근위			
노가리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경쟁업체	원재료및 부재료일체	거래상대방별로 기재된 제품은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판매가 목적인 고객	원재료및 부재료일체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후라이드치킨	22,000	월별로 홈페이지에 공지또는 공문발송	2023.12월 기준
양념치킨/순살양념	23,000	"	"
데리(간장)치킨	23,000	"	"
삼삼맵킹치킨	23,000	"	"
윙(날개)치킨	22,000	"	"
봉(다리)치킨	22,000	"	"
순살치킨	22,000	"	"
마늘갈릭차우	23,000	"	"
파닭	23,000	"	"
허니버터치즈범벅	23,000	"	"
허니버터치즈순살범벅	23,000	"	"
참숯불바베큐	18,000	"	"
불고기콘피자	3,000	"	"
베이컨포테이토	3,000	"	"
슈프림 콘피자	3,000	"	"
밤리치 콘피자	3,000	"	"
핫치킨 콘피자	3,000	"	"
훈제치킨	18,000	"	"
뼈없는 닭발	18,000	"	"
감자튀김	7,000	"	"
불닭	18,000	"	"
콜빙이	18,000	"	"
근위	15,000	"	"
노가리	15,000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합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닭고기를 전문으로 하는 가맹사업	정기스칸치킨	해당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인구 1만명 당 1점포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500M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행정구역당 1점포 단, 특수상권(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등)은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 매출증가로 가맹점사업자가 배달 지연이나 배달 포기과 같이 시장의 수요에 대한 공급을 원활히 하지 못할 경우 - 매출증가로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소 내에서 시장의 수요에 대한 공급을 위한 생산능력에 한계가 있는 경우 - 성의있는 영업을 하지 않는관계로 영업소 내에서 시장의 수요에 대한 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데 대하여 별다른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맹본부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영업지역을 침범하는 경우 피해액 보상차원에서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합니다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수 있습니다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징기스칸치킨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징기스칸치킨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사항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100%	0%	0%	0%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10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 1) 가맹계약및 갱신기간

징기스칸치킨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2년입니다

-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 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 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10가지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비용 에 대한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26조 1항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제26조 2항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제26조 3항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26조 4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물품 거래량이 금액기준으로 연간 월평균 3,000천원 이하인 경우	제26조 5항
○ 징기스칸치킨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26조 6항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단,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26조 7항
○ 가맹본부나 가맹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26조 8항
○ 가맹본부나 가맹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등으로 지급 거절된 경우	제26조 9항
○ 가맹점사업자에게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이 발생하여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수 없게 된 경우	제26조 10항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내용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본부의 각 항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37조 1항
○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없이 영업의 지원이나 원부자재의 공급을 불이행하는 경우	제37조 3항
○ 가맹본부가 요청한 방법에 따라 성의있는营业을 하지않을 경우	제37조 4항
○ 가맹사업자가 지불책임있는 어음,수표의 부도가 발생한 경우및 기타 지불을 연체한 경우	제37조 5항
○ 가맹사업자가 파산,금치산,준금치산 선고를 받거나 은행거래 정지처분,차압,가처분,경매,강제집행,회사정리,법정관리 수속을 받거나 스스로 신청한 경우	제37조 6항
○ 가맹사업자가 사망했을 경우(단, 법적 상속인이 인수함을 가맹본부가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7조 7항
○ 가맹사업자가 형사소송 사건에 관련되어 가맹본부의 시스템에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했을 경우	제37조 8항
○ 기타 가맹본부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했을 경우	제37조 9항
○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제품 이외의 유사제품을 원재료로사용했을경우	제37조 10항
○ 가맹본부가 정해진 실내·외 점포설계(간판,썬팅,로고등의 디자인,내부 인테리어의 색상변경)를 임의로 변경하였을 경우	제37조 11항
○ 가맹사업자가 계약기간 내에 동일한 사유로 가맹본부로부터 2회이상 또는 다른 사유를 포함한 총 3회 이상의 물품공급중단을 당한경우	제37조 12항
○ 가맹점사업자가 물품대금을 연속3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제37조 13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이를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과징금·과태료 등의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을 통보받고도 행정청이 정한 시정기한(시정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제37조 14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37조 15항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7조 16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37조2항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37조2항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37조2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37조2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7조2항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37조2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37조2항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37조2항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37조2항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가맹본부가 계약서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조건을 변경할수 있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사유 발생→ 당사 담당팀 검토→ 수정계약서(안)작성→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가맹점사업자 동의 →수정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동의를 있는 경우 수정 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만약 귀하가 계약 수정에 관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에 합당한 근거를 서면으로 30일 이내에 가맹본부로 제출하고, 한국 공정거래조정원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중재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양도 · 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을 환매하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양수인은 양수당시 신규 가맹사업자의 계약 내용과 동일한 기준 적용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 및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본사 관리팀 080-636-7486]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 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운영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상속	본부 승인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이 3개월 내에 서면으로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1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통지 → 가맹본부의 상속에 의한 사업자 변경 계약 체결 (약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상속
대리행사	본부 승인시 가능	본인이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30일 가량 소요) → 승인여부 통지 → 가맹점운영권 대리행사
업무위탁	불가능	해당없음	해당없음

상속이나 대리행사의 경우 가맹금은 없습니다. 다만, 교육비 등은 매장운영을 위한 실제 투입 경비이므로 이는 부담하여야 합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동안 [지역 내에서] 귀하가 징기스칸치킨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 닭고기를 조리하여 튀기거나 굽는형태로 판매하는 업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영업팀 (043-277-4031)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정키스칸치킨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일 24시간	365일 연중 무휴 영업	문의: 영업팀 (043-277-403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오전 0시 또는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3개월간 영업 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3명 이상	제한 없음	직계 및 배우자 또는 당사 교육을 이수한자	점주의 부재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가맹본부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비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점검하는 방식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본사의 영업방침에 대해 교육을 받은 슈퍼바이저를 통해 교육이 이뤄지고 있으므로 방문마다 별도의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점검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별도로 공지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징기스칸치킨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대중매체 광고 명절, Day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상품광고 +가맹점 모집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판촉행사	할인행사	할인금액 (소비자가) 50%	할인금액 (소비자가) 50%	행사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시행 → 종료 후 최종분담금 확정	판촉행사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70% 이상의 동의시 전체 적용
	증정행사	증정상품 출하가 50%	증정상품 출하가 50%	"	"
	팸플렛 등 제작	판촉물 제작비용 50%	판촉물 제작비용 50%	"	"
	기타 개별행사	행사에 따라 달라짐		행사 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종료후 최종 분담금 확정	월별 판촉 행사
할인카드 · 멤버십 제휴서비스	제휴행사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당사는 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브랜드광고와 제품광고 등을 총괄하며 당사의 경영적 판단과 결정에 의하여 광고에 사용되는 소재와 매체,횟수,시행일자 및 기간등의 계획을 수립 시행할수 있습니다.공동광고는 전체 가맹점의 매출활성화를 위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참여하여야 합니다.이때 발생하는 광고 비용은 가맹본부 50%,가맹점사업자 측 50%로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광고 실시 최소 1개월 이전에 그 광고의 성격과 전체비용 및 각 가맹점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광고비를 통지하고 가맹본부의 통지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가맹본부로 광고·판촉 활동 계획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본 계약을 위반한 상대방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본 계약에 달리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 실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 · 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30일 정도가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비 고
가맹희망자 문의및접수	- 전화문의 접수 (080-636-7486)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5	IV.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영업개시이전 부담 참조
사업 설명 · 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제공 (최소14일전)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자금규모확인	D-40	
상권분석 실시	- 타당성및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27~26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 오픈일정및 관련 협의	D-26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4(1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 주방기물/시설물품 협의	D-24~10(14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 매뉴얼 제공	D-7~4(3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귀하는 IV장 1.영업개시 이전의 부담에 기재된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국민은행에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국민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기업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SOHO센터로 들어가셔서 “가맹금예치제도”를 클릭하신 후 가맹점사업자를 찾아 화면에 나와있는 순서대로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귀하께서 금융기관에 예치하신 가맹금은 징기스칸치킨에 귀속되며 가맹금의 반환 사유가 생길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절차와 내용으로 반환 받을수 있습니다.단, 교육비의 경우 위에IV장 1번의 내용과 같이 교육이 시작한 경우에 반환되지 않습니다

귀하는 또한 국민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 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Ⅷ.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 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 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비고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간판교체 비용 ○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	○ 점포환경개선 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	○간판교체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	○가맹점사업자의 투자금액(임차료 등), 월평균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	”	

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 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집기·장비 교체비용	점포환경개선 : 50%~10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50~80% -단, 집기·장비 교체비용은 20% 부담			
· · · ·					

2. 판매촉진 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여부 및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별도)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개점 행사비	가맹점 오픈시 관촉인원 파견 및 전단지, 기념품 등의 관촉비용 지원	가맹점의 매장면적, 예상매출액에 따라 관촉인원 수 및 관촉비용 차등 지원	오픈일로부터 2일간	100~200 만원 한도	
관촉장려금	매월 가맹점 매입금액의 2% 이내 범위에서 장려금 지원	직전 2개월 평균 매입 금액이 1000만원 이상 가맹계약 위반사항이 없을 것 *지원조건 미충족시 지원하지 않음	가맹계약기간	직전 2개월 평균 매입금액이 1000~2000만원 : 매입금액의 2% 2000만원 초과~ 3000만원 : 매입금액의 3% 3000만원 초과시 : 매입금액의 5%	익월 상품대금 차감방식 으로 지원
관촉지원	해당사항없음	없음 (전 가맹점 해당)	가맹계약기간	소요되는 비용 전액 당사 부담	
판매용 집기 무상대여	해당사항없음	없음 (전 가맹점 해당)	가맹계약기간	소요되는 비용 전액 당사 부담	
반품지원	시즌행사(크리스마스, 연말연시) 가정의 날 등시 출시되는 제품류 중 일정한 품목에 대하여 반품지원	시즌행사 제품류 중 반품지원 품목 지정상품에 한함	시즌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	가맹점 매입금액의 80% 인정하여 지원금액 산정	
마일리지	해당사항없음	없음 (전 가맹점 해당)	가맹계약기간	소요되는 비용 전액 당사 부담	가맹점 관촉마일리지 지급
CRM	우수고객에 대한 고객 유입 DM발송	없음 (전 가맹점 해당)	분기별 1회	소요되는 비용 전액 당사 부담	
테스터	고객이 사용할 수 있는 테스터공급 지원	없음 (전 가맹점 해당)	신제품 출시시	소요되는 비용 전액 당사 부담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 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7]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영업팀 (043-277-4031)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 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7]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문의: 영업팀 (043-277-4031)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징기스칸치킨]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단위: 원, 부가세 포함)

신용명 또는 내용	신용제공자	금액	신용 형태	신용제공 조건
자금 지원	본사	최대 5천만원	신용 대출	임원 면담 후 결정
프랜차이즈 우대신용 대출	국민은행	최대 3천만원	담보 대출	가맹본부 확인 신용등급 6등급이상 5천만원 이상 담보 제공

구체적인 신용제공 조건은 귀하의 신용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 지원을 원하는 경우 080-636-7486로 상담하기 바랍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아래 지원내용 이외에도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매출부진 경영지원	매출부진 가맹점 판매촉진을 위한 경영지원	직전 3개월간 매출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가맹계약기간	경영 컨설팅 제공	
매출향상 행사지원	매출향상 위한 가맹점 행사 계육 지원	전 가맹점	가맹계약기간	행사 계육 100마리 지원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징기스칸치킨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교육	회사 소개 제품 조리 서비스,광고및 마케팅교육 위생,안전,기물/기기류 관리 교육 POS 사용, 입금 방법 등	이론교육 실습교육	가맹계약 체결 후 일주일 이내	필수 교육
보수 교육	신메뉴 가공 종업원 관리 실무 등	실습교육		필요시 교육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징기스칸치킨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가맹사업자의 능력 및 경력에 따라 이론 교육및 실습 교육 기간은 조절및 변경 가능합니다.

(부가세 포함)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비고
신규 교육	2일	1,650	최초 계약시 이수
보수 교육	3일	200~500	필요시 수시 이수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제30조에 따라 7일 내로 3일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기한내 보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제30조 1항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여야하며 이는 필수 사항이 아니므로 가맹점사업자가 요구시에 진행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점을 부여받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당사는 현재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영업팀(080-636-7486)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종합상담과(02-2023-4010)** 또는 **가맹유통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 www.czk.co.kr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2023 가맹점 목록]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별첨] < 2022~2023년 재무제표 >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별첨] < 2021~2022년 재무제표 >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